

예술정보산업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술산업의 과학적 기포를 마련하고 21세기의 예술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예술 기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예술정보산업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본 연구소는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예술기술의 선진화 및 산업화와 이와 관련된 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예술기술개발의 창안 및 이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
2. 산업체 및 기타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연구용역 및 기술상담
3. 전문연구소와 영역간 합동연구, 대형 목적기술 연구의 공동 연구
4. 재학생 상대의 훈련형 교육 및 일반 예술정보산업인의 교육형 연구지도
5. 국내외 우수 연구소와의 학술교류 및 심포지엄 개최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 및 임원) ① 연구소는 음향영상디자인 연구분과, 예술정보디자인 연구분과, 예술컨설팅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.

1. 음향디자인 연구분과는 음향의 음문화(音文化), 음향환경, 음향정보 및 영상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 기술의 응용을 담당한다.
2. 예술정보 연구분과는 문화예술, 미디어 디자인, 정보환경에 관한 기초연구와 그 응용을 담당한다.
3. 예술컨설팅 연구분과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② 예술정보산업연구소의 직제편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 소장
2. 분과장
3. 연구위원 :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
4. 객원연구원, 보조연구원
5. 간사
6. 조교 및 사무직원

③ 연구소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: 1명
2. 분과장 : 각 연구분과별 1명
3. 간사 : 1명

제5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연구소장은 각 연구분과장 중에서 간사를 위촉한다.

②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위원 및 연구원) ① 본 연구소에 연구위원 및 연구원(객원, 보조)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의 임용기간은 본 대학 재임기간으로 하고, 연구원(객원, 보조)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조교 및 사무직원) ① 조교 및 사무직원은 연구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업무를 보조한다.

②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, 위원은 각 연구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연구소 간사가 겸한다.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
2. 내규의 제정 및 개폐
3. 연구계약체결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5. 객원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위촉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보고

제14조(보고) 연구소장은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운영보고서(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4. 연구계약체결 현황,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

제5장 연구 논문집

제15조(연구논문집 명칭 및 발행) ① 연구소의 논문집 명칭은 “예술정보산업지(JOURNAL OF THE ART AND INFORMATION INDUSTRY)”로 한다.

② 연구논문집은 년 1회 이상 발행한다.

제16조(논문의 제출자격) 논문의 제출자격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.

제17조(편집위원회) ①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제 간행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장 재정

제18조(재정의 총당) ① 연구소 재정은 학술용역사업 수입금, 기부금, 기타보조금으로 총당한다.

제19조(해산) 본 연구소가 해산될 때는 잔여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시킨다.

제7장 운영세칙

제20조(운영세칙)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6. 11. 28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운영규정에 따른다.